

• 21세기 미래문화도시 • 더불어 행복도시 • 사람중심 열린도시



연수구보



하나같이 여는 시장.
더불어 누리는 행복.

발행·편집인:연수구청장 / 발행처:인천광역시 연수구 / 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우)21967 ☎ 749-7392 / FAX 749-7399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 | |
|--------|---------|
| 선 람 | 기 관 의 장 |
| | |

부록 제1296호 2022. 2. 21.(월)

【공 고】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2-233호(하나래근린공원 조성사업(2차) 수용재결 신청서류 열람 공고) 1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2-242호(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입법예고) 2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2-260호(수용재결 신청 서류 열람 공시송달 공고[소암마을-대건고교간 도로개설공사, 3차(22수용0063)]) 8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2-265호(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10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2-266호(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6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2-269호(인천광역시 연수구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 제정 입법예고) 44

| | | | | | | | |
|--------|--|--|--|--|--|--|--|
| 회 람 | | | | | | | |
|--------|--|--|--|--|--|--|--|

학나래근린공원 조성사업(2차) 수용재결 신청서류 열람 공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시 제2020-210호(2020. 6. 15.)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되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시 제2021-203호(2021. 6. 28.)호로 실시계획정정고시 된 학나래근린공원 사업구역 내 편입되어 있는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 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토지 등 소유자는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2월 21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1. 사 업 명: 학나래근린공원 조성사업(2차)
2. 사 업 위 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325-5번지 일원
3. 사업 시행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4. 서류의 종류 및 명칭: 별첨 「수용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 참조
5.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2022. 2. 21.~ 3. 8. (14일 이상)
6. 열람장소 및 방법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공원녹지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3층 공원녹지과 / ☎032-749-8722)
 - 한국부동산원 북부보상사업단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 94, 백양빌딩 405호 / ☎032-569-7566~8)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표시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326-8번지 등 5필지
 - 토지소유자 : 오○복(서울특별시 강북구 덕릉로○길 ○) 외 6인
8. 수용할 토지에 있는 물건의 표시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326-12번지 사철나무 등 총 86건
9. 기 타
 - 관계서류는 연수구청 공원녹지과(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에 비치하고 있으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열람공고기간 경과 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2월 16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자치법규명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 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안 제7조)
- 위원회 수당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위원회의 활동 결과보고(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3. 8.(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이 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연수구청 기획예산실(☎749-70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서식

| 개 정 (안) | 사 유(구체적으로) |
|---------|------------------|
| | (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

마. 보내실 곳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 연 락 처 : 전화 749-7082, FAX 749-7079
- E- mail : toyhy84@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yeonsu.go.kr/>

바. 첨부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선인”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7조 및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구청장직”이란 법에 따라 부여된 구청장의 지위와 권한 등 직무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법 제105조제5항제2호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6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 등 규정에 따라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 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법

제10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①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같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당선인”이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② 당선인을 보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인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인수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④ 인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⑤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시·도: 20명 이내
2. 시·군 및 자치구: 15명 이내

⑥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⑦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

⑧ 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⑨ 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수용재결 신청 서류 열람 공시송달 공고

인천광역시로부터 소암마을~대건고교간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8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 사업명 : 소암마을~대건고교간 도로개설공사
-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수입자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 공고기간 : 2022. 2. 18.(금) ~ 2022. 3. 4.(금) (14일 간)
- 열람서류 : 별첨 [수용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 참조
-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건설과(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 ☎ 032-749-8513)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표시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559-48번지 외 1필지 [총 2필지(1,443㎡)] 및 지장물 2건
 - 토지소유자 : 유*창(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대학*길 *-*)외 2명
 - 토지관계인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서울특별시 관악구 보라매로*길 **)외 1
 - 물건소유자 : 강*봉(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산**-**)

□ 수용할 토지에 있는 물건의 표시

- 토 지

| 소재지 | 지 번 | | 지목 | 편입면적(㎡) | 지 분 | 소유자 | | 관계인 | | | 비 고 | |
|------------|--------|--------|----|---------|-------|-----|---------------------------------|---------------------|----------------------|-------|-----|----------------|
| | 당초 | 변경 | | | | 성 명 | 주 소 | 성 명 | 주 소 | 권리관계 | | |
| 연수구 동춘동 | 559-4 | 559-48 | 임야 | 28 | 1 / 3 | 유*창 | 서울 관악구 대학**길 *-* | | | | | 보상금액은 별도 안내 |
| | | | | | 1 / 3 | 유*석 | 서울 강남구 선릉로69길 **, **동, ****호 | | | | | |
| | | | | | 1 / 3 | 유*곤 | 서울 강남구 선릉로69길 **, **동, ****호 | | | | | |
| | 산65-14 | 산65-26 | 임야 | 1,415 | 1 / 3 | 유*창 | 서울 관악구 대학**길 *-* | 국민건강보험 공단 **지사 | 서울 관악구 보리매로 *길 ** | 압류권리자 | | |
| | | | | | 1 / 3 | 유*석 | 서울 강남구 선릉로69길 **, **동, ****호 | 국민건강보험 공단 ****지사 |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 | 압류권리자 | | |
| | | | | | 1 / 3 | 유*곤 | 서울 강남구 선릉로69길 **, **동, ****호 | 국민건강보험 공단 ****지사 |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 | 압류권리자 | | |

- 지 장 물

| 소재지 | 지 번 | | 물건의 종류 | 구 조 | 면적 및 수량 | 단위 | 소유자 | | 비 고 |
|------------|--------|--------|-----------|-----|---------|----|-----|---------------------------|----------------|
| | 당초 | 변경 | | | | | 성 명 | 주 소 | |
| 연수구 동춘동 | 산63-27 | 산63-28 | 포도나무 | - | 30 | 주 | 강*봉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산***-*** | 보상금액은 별도 안내 |
| | 산63-27 | 산63-29 | 창고 | 목조 | 60 | ㎡ | | | |

□ 기 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송달),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건설과(☎ 032-749-85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2월 18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자치법규명

-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 개정이유

-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 폐지 및 2022년도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별 사무를 재조정하여 업무 추진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 기간 만료에 따른 조문 삭제 (안 제8조의2)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안 제12조)
- 부서별 분장사무 조정 (안 별표1)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2. 21.(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다.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연수구청 기획예산실 (☎749-70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라. 제출서식

| 개 정 (안) | 사 유(구체적으로) |
|---------|------------------|
| | (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

- 마. 보내실 곳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 연 락 처 : 전화 749-7082, FAX 749-7079
 - E- mail : toyhy84@korea.kr
- 바. 첨부
 -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붙임1]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등 조례 시행”을 “등”으로 한다.

제8조의2를 삭제한다.

제12조 중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로 한다.

별표 1 중 세무2과의 분장사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방세(자동차세, 취득세(차량), 등록면허세(차량), 지방소득세)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2. 지방세(자동차세, 취득세(차량), 등록면허세(차량), 지방소득세) 이의 신청(심의위원회) 및 심사청구서 전달에 관한 사항
3. 지방세(자동차세, 취득세(차량), 등록면허세(차량), 지방소득세) 납세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지방세(자동차세, 취득세(차량), 등록면허세(차량), 지방소득세) 과세 대장 정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지방세(자동차세, 취득세(차량), 등록면허세(차량), 지방소득세) 징수 업무의 종합조정 및 통제에 관한 사항
6. 현년도, 과년도 지방세 체납관리 에 관한 사항
7. 현년도 지방세(자동차세, 취득세(차량), 등록면허세(차량), 지방소득세) 독촉고지에 관한 사항
8. 현년도, 과년도 지방세(자동차세, 취득세(차량), 등록면허세(차량), 지방소득세) 부과취소·경정 및 가산금조정에 관한 사항
9. 현년도, 과년도 지방세 증가산금 조정에 관한 사무
10. 지방세 교부청구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11. 수입금 출납사무 및 과오납금 환불에 관한 사항
12. 구금고 계약 및 수납기관 지도에 관한 사항
13. 세외수입의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14. 기부금품 모집 통제에 관한 사항
15. 기부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16. 구 수입증지에 관한 사항
17. 체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요율 조정에 관한 사항
18. 채권관리 및 세입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19. 지방세 체납액 정리계획 수립
20. 현년도, 과년도 지방세 징수촉탁서 처리 및 교부청구에 관한 사항
21. 현년도, 과년도 지방세 재산압류 및 공매에 관한 사항
22. 지방세 징수 포상금에 대한 사항
23. 지방세 체납자 형사고발에 대한 사항
24. 지방소득세 부과·징수·환급
25. 지방소득세 공제·감면
26. 지방소득세 대장관리·전산시스템 운영
27. 세외수입(일반회계) 과년도 체납처분(교부청구제외)에 관한사항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재산임대수입, 변상금, 수수료수입, 보조금반환수입, 기타수입, 과징금(부동산실명법과징금), 환수금, 부담금(개발부담금) 제외)
28. 지방세 신용카드 수납

별표 1 중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의 분장사무란을 삭제한다.

별표 1 중 평생교육과의 분장사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기관(시설)과의 프로그램운영 및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에 관한 사항
5.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
6. 평생학습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7. 평생교육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아시아·태평양 학습도시연맹(APLC) 운영에 관한 사항
9. 북카페(The Story) 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평생학습도시 발전과 관련한 사항
11. 교육정책에 관한 사항
12.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및 정산에 관한 사항
13.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4.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15.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16. 교육복지우선지역 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
17. 취학사무에 관한 사항
18. 각급 학교 표창 지원에 관한 사항
19. 연수구 장학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
20. 학교·지역사회 연계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21. 지역교육사업을 위한 학교 및 교육청 업무 지원
22. 교육국제화특구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23. 해외우호교류도시와의 학생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24. 영어체험교실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5. 그 밖에 교육문화자치국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u>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u>」(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본청의 국장 및 부서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부서의 사무분장 등 <u>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u>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 <p>제1조(목적) ----- 「<u>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u>」 ----- -----, ----- ----- -- 등----- -----.</p> |
| <p>제8조의2(<u>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u>) <u>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고,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u></p> | <p><삭 제></p> |
| <p>제12조(동장의 직급) 「<u>지방자치법</u>」 <u>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u> 동에 두는 동장의 직급은 “별표 4”와 같다.</p> | <p>제12조(동장의 직급) 「<u>지방자치법</u>」 <u>제131조에 따라</u> ----- -----.</p> |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및 정원 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2월 18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자치법규명

-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2. 개정이유

-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에 따라 기관(부서)별, 직급별, 직렬별 정원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별표)
- 기관별 정원

| 구 분 | 계 | 본청 | 의회 | 직속기관 (보건소) | 동 |
|-------|-----|-----|----|---------------|-----|
| 현 정 원 | 979 | 644 | 22 | 86 | 227 |
| 조정(안) | 979 | 641 | 22 | 88 | 228 |

○ 직급별 정원

| 구 분 | 계 | 정무직 | 4급 이상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연구직 | 별정직 |
|-------|-----|-----|-------|----|-----|-----|-----|-----|-----|-----|
| 현 정원 | 979 | 1 | 9 | 60 | 223 | 294 | 285 | 103 | 1 | 3 |
| 조정(안) | 979 | 1 | 8 | 59 | 225 | 293 | 285 | 104 | 1 | 3 |
| 증 감 | - | - | -1 | -1 | 2 | -1 | - | 1 | - | - |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안(별표)

○ 부서별 정원

| 구 분 | | 정 원 | | |
|-------|-------------|-----|-----|-----|
| | | 전 | 후 | 증감 |
| 총 정 원 | | 979 | 979 | - |
| 구 분 청 | 송 도 관 리 단 | 16 | 17 | 1 |
| | 감 사 실 | 11 | 12 | 1 |
| |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 | 12 | - | ▲12 |
| | 평 생 교 육 과 | 15 | 18 | 3 |
| | 경 제 지 원 과 | 17 | 18 | 1 |
| | 도 시 계 획 과 | 15 | 16 | 1 |
| | 교 통 행 정 과 | 15 | 16 | 1 |
| | 차 량 민 원 과 | 19 | 20 | 1 |
| 보 건 소 | 질 병 관 리 과 | 19 | 21 | 2 |
| 동 | 송 도 3 동 | 15 | 16 | 1 |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2. 21.(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이 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연수구청 기획예산실(☎749-70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서식

| 개 정 (안) | 사 유(구체적으로) |
|---------|------------------|
| | (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

마. 보내실 곳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 연 락 처 : 전화 749-7082, FAX 749-7079
- E- mail : toyhy84@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yeonsu.go.kr/>

바. 첨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붙임1】

인천광역시 연수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직렬별 정원 (제2조 관련)

| 기관별 직렬별 | 계 | 구 본청 | 의회사무 기구 | 직속기관 (보건소) | 동 | 복지담당 행정직 ¹⁾ |
|---------------|-----|------|------------|---------------|-----|---------------------------|
| 합계 | 979 | 641 | 22 | 88 | 228 | 11 |
| 정무직 | 1 | 1 | | | | |
| 일반직 | 974 | 636 | 22 | 88 | 228 | 11 |
| 3급 | 1 | 1 | - | - | - | |
| 행정 | 1 | 1 | | | | |
| 4급 | 7 | 5 | 1 | 1 | - | |
| 행정 | 1 | 1 | | | | |
| 기술 | 1 | | | 1 | | |
| 행정·기술 | 5 | 4 | 1 | | | |
| 5급 | 59 | 33 | 2 | 9 | 15 | |
| 행정 | 23 | 15 | 2 | | 6 | |
| 의무 | 5 | | | 5 | | |
| 행정·사회복지 | 12 | 5 | | | 7 | |
| 행정·사서 | 1 | 1 | | | | |
| 행정·보건 | 2 | 1 | | 1 | | |
| 행정·시설 | 8 | 8 | | | | |
| 행정·환경 | 3 | 2 | | | 1 | |
| 행정·녹지·시설 | 1 | 1 | | | | |
| 행정·보건·간호 | 1 | | | 1 | | |
| 행정·사회복지·시설·환경 | 1 | | | | 1 | |
| 보건·간호·약무·의료기술 | 2 | | | 2 | | |
| 6급 | 225 | 165 | 5 | 17 | 38 | 1 |
| 행정 | 83 | 65 | 3 | | 15 | 1 |

| 기관별 직렬별 | 계 | 구 본청 | 의회사무 기구 | 직속기관 (보건소) | 동 | 복지담당 행정직 ¹⁾ |
|-------------|----|------|------------|---------------|----|---------------------------|
| 세무 | 15 | 15 | | | | |
| 사회복지 | 19 | 4 | | | 15 | |
| 전산 | 2 | 2 | | | | |
| 공업 | 2 | 2 | | | | |
| 녹지 | 4 | 4 | | | | |
| 보건 | 6 | 4 | | 2 | | |
| 간호 | 3 | | | 3 | | |
| 환경 | 1 | 1 | | | | |
| 시설 | 17 | 17 | | | | |
| 의료기술 | 1 | | | 1 | | |
| 운전 | 3 | 3 | | | | |
| 기계운영 | 1 | 1 | | | | |
| 사무운영 | 2 | 1 | | | 1 | |
| 행정·전산 | 3 | 3 | | | | |
| 행정·세무 | 3 | 3 | | | | |
| 행정·사회복지 | 18 | 10 | 1 | | 7 | |
| 행정·사서 | 6 | 6 | | | | |
| 행정·공업 | 3 | 3 | | | | |
| 행정·방송통신 | 1 | 1 | | | | |
| 행정·보건 | 2 | 1 | | 1 | | |
| 행정·환경 | 5 | 5 | | | | |
| 행정·시설 | 8 | 7 | 1 | | | |
| 공업·시설 | 4 | 4 | | | | |
| 시설·방재안전 | 1 | 1 | | | | |
| 보건·간호 | 2 | | | 2 | | |
| 약무·간호 | 1 | | | 1 | | |
| 행정·공업·녹지 | 1 | 1 | | | | |
| 행정·환경·공업 | 1 | 1 | | | | |
| 보건·의료기술·간호 | 3 | | | 3 | | |
| 보건약무간호·의료기술 | 4 | | | 4 | | |

| 기관별 직렬별 | 계 | 구 본청 | 의회사무 기구 | 직속기관 (보건소) | 동 | 복지담당 행정직 ¹⁾ |
|------------|------------|------------|------------|---------------|-----------|---------------------------|
| 7급 | 293 | 209 | 8 | 23 | 53 | 1 |
| 행정 | 127 | 88 | 8 | | 31 | 1 |
| 세무 | 12 | 12 | | | | |
| 사회복지 | 34 | 15 | | | 19 | |
| 전산 | 4 | 4 | | | | |
| 사서 | 3 | 3 | | | | |
| 공업 | 8 | 8 | | | | |
| 녹지 | 7 | 7 | | | | |
| 수의 | 1 | 1 | | | | |
| 보건 | 8 | 5 | | 3 | | |
| 의료기술 | 3 | | | 3 | | |
| 간호 | 9 | | | 9 | | |
| 환경 | 6 | 6 | | | | |
| 방재안전 | 1 | 1 | | | | |
| 시설 | 27 | 27 | | | | |
| 방송통신 | 2 | 2 | | | | |
| 운전 | 3 | 3 | | | | |
| 기계운영 | 1 | 1 | | | | |
| 행정·세무 | 3 | 3 | | | | |
| 행정·사회복지 | 14 | 11 | | | 3 | |
| 행정·전산 | 2 | 2 | | | | |
| 행정·사서 | 1 | 1 | | | | |
| 행정·환경 | 2 | 2 | | | | |
| 행정·수의 | 1 | 1 | | | | |
| 행정·시설 | 3 | 3 | | | | |
| 시설·방재안전 | 2 | 2 | | | | |
| 시설·사회복지 | 1 | 1 | | | | |
| 보건·간호 | 4 | | | 4 | | |
| 보건·간호·의료기술 | 2 | | | 2 | | |
| 보건·의료기술·약무 | 2 | | | 2 | | |

| 기관별 직렬별 | 계 | 구 본청 | 의회사무 기구 | 직속기관 (보건소) | 동 | 복지담당 행정직 ¹⁾ |
|------------|-----|------|------------|---------------|----|---------------------------|
| 8급 | 285 | 169 | 6 | 34 | 76 | 8 |
| 행정 | 116 | 64 | 3 | 2 | 47 | 8 |
| 세무 | 6 | 6 | | | | |
| 사회복지 | 29 | 13 | | | 16 | |
| 전산 | 6 | 6 | | | | |
| 사서 | 3 | 3 | | | | |
| 속기 | 2 | | 2 | | | |
| 공업 | 10 | 10 | | | | |
| 녹지 | 4 | 4 | | | | |
| 보건 | 8 | 5 | | 3 | | |
| 의료기술 | 3 | | | 3 | | |
| 간호 | 20 | | | 20 | | |
| 환경 | 3 | 3 | | | | |
| 시설 | 21 | 21 | | | | |
| 방재안전 | 2 | 2 | | | | |
| 방송통신 | 3 | 3 | | | | |
| 운전 | 5 | 1 | 1 | 3 | | |
| 행정·사회복지 | 24 | 11 | | | 13 | |
| 행정·시설 | 3 | 3 | | | | |
| 행정·사서 | 3 | 3 | | | | |
| 행정·세무 | 2 | 2 | | | | |
| 녹지·시설 | 1 | 1 | | | | |
| 공업·시설 | 1 | 1 | | | | |
| 행정·환경 | 4 | 4 | | | | |
| 행정·보건 | 2 | 2 | | | | |
| 행정·방송통신 | 1 | 1 | | | | |
| 보건·간호 | 3 | | | 3 | | |

| 기관별 직렬별 | 계 | 구 본청 | 의회사무 기구 | 직속기관 (보건소) | 동 | 복지담당 행정직 ¹⁾ |
|--------------|------------|-----------|------------|---------------|-----------|---------------------------|
| 9급 | 104 | 54 | - | 4 | 46 | 1 |
| 행정 | 29 | 13 | | | 16 | 1 |
| 세무 | 6 | 6 | | | | |
| 사회복지 | 28 | 9 | | | 19 | |
| 사서 | 2 | 2 | | | | |
| 녹지 | 1 | 1 | | | | |
| 보건 | 2 | 1 | | 2 | | |
| 시설 | 5 | 5 | | | | |
| 환경 | 1 | 1 | | | | |
| 행정·사회복지 | 13 | 2 | | | 11 | |
| 행정·세무 | 4 | 4 | | | | |
| 행정·시설 | 1 | 1 | | | | |
| 행정·공업 | 1 | 1 | | | | |
| 행정·녹지 | 1 | 1 | | | | |
| 행정·수산 | 1 | 1 | | | | |
| 행정·보건 | 4 | 2 | | 2 | | |
| 행정·사서 | 1 | 1 | | | | |
| 시설·방재안전 | 1 | 1 | | | | |
| 공업·시설 | 2 | 2 | | | | |
| 연구직 | 1 | 1 | | | | |
| 기록연구사 | 1 | 1 | | | | |
| 별정직 | 3 | 3 | | | | |
| 6급 상당 | 1 | 1 | | | | |
| 행정·별정(비서) | 1 | 1 | | | | |
| 7급 상당 | 1 | 1 | | | | |
| 행정·별정(비서) | 1 | 1 | | | | |
| 8급 상당 | 1 | 1 | | | | |
| 행정·별정(비서) | 1 | 1 | | | | |

1) 복지담당 행정직 : 괄호() 표기된 숫자는 행정직 중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정원 수임.

【붙임2】

인천광역시 연수구 훈령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3,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구 본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제2조제1항 관련)

| 부서 | 직종 | 직급 | 정원 | 직 렬 |
|-----------|-----|----|-----|------------------|
| 합 계 | | | 641 | |
| 기 획 예 산 실 | 계 | | 19 | |
| | 일반직 | 소계 | 19 | |
| | | 5급 | 1 | 행정1 |
| | | 6급 | 5 | 행정5 |
| | | 7급 | 11 | 행정11 |
| | | 8급 | 2 | 행정2 |
| | | 9급 | | |
| 송 도 관 리 단 | 계 | | 17 | |
| | 일반직 | 소계 | 17 | |
| | | 5급 | 1 | 행정·시설1 |
| | | 6급 | 6 | 시설4, 행정·공업1, 녹지1 |
| | | 7급 | 5 | 공업1, 녹지2, 시설2 |
| | | 8급 | 3 | 행정1, 시설1, 행정·시설1 |
| | | 9급 | 2 | 시설1, 공업·시설1 |
| 감 사 실 | 계 | | 12 | |
| | 일반직 | 소계 | 12 | |
| | | 5급 | 1 | 행정1(개방1) |
| | | 6급 | 7 | 행정5, 세무1, 행정·사회1 |
| | | 7급 | 3 | 행정1, 시설1, 행정·시설1 |
| | | 8급 | 1 | 행정1 |
| | | 9급 | | |

| 부서 | 직종 | 직급 | 정원 | 직 렬 |
|--------|-----|-----|----|------------------------------|
| 홍보미디어실 | 계 | | 16 | |
| | 일반직 | 소계 | 16 | |
| | | 5급 | 1 | 행정1 |
| | | 6급 | 3 | 행정1, 전산1, 행정·전산1 |
| | | 7급 | 7 | 행정3, 전산3, 행정·전산1 |
| | | 8급 | 5 | 전산4, 방송통신1 |
| | | 9급 | | |
| 총무과 | 계 | | 31 | |
| | 정무직 | | 1 | 구청장1 |
| | 일반직 | 소계 | 27 | |
| | | 3급 | 1 | 행정1 |
| | | 4급 | 1 | 행정·기술1 |
| | | 5급 | 2 | 행정2 |
| | | 6급 | 6 | 행정5, 운전1 |
| | | 7급 | 11 | 행정10, 운전1 |
| | | 8급 | 6 | 행정6 |
| | | 9급 | | |
| | | 별정직 | 소계 | 3 |
| | 6급 | | 1 | 행정·별정(비서요원) |
| | 7급 | | 1 | 행정·별정(비서요원) |
| | 8급 | | 1 | 행정·별정(비서요원) |
| 재무회계과 | 계 | | 22 | |
| | 일반직 | 소계 | 22 | |
| | | 5급 | 1 | 행정1 |
| | | 6급 | 7 | 행정2, 사무운영1, 운전2, 공업1, 공업·시설1 |
| | | 7급 | 7 | 행정4, 공업1, 시설1, 운전1 |
| | | 8급 | 5 | 행정2, 시설2, 운전1 |
| | | 9급 | 2 | 행정1, 공업·시설1 |

| 부서 | 직종 | 직급 | 정원 | 직 렬 |
|-----------|-----|----|----|----------------------------------|
| 세 무 1 과 | 계 | | 25 | |
| | 일반직 | 소계 | 25 | |
| | | 5급 | 1 | 행정1 |
| | | 6급 | 10 | 세무9, 행정·세무1 |
| | | 7급 | 5 | 세무5 |
| | | 8급 | 5 | 행정1, 전산1, 세무3 |
| | | 9급 | 4 | 세무1, 행정·세무3 |
| 세 무 2 과 | 계 | | 26 | |
| | 일반직 | 소계 | 26 | |
| | | 5급 | 1 | 행정1 |
| | | 6급 | 6 | 세무5, 행정·세무1 |
| | | 7급 | 7 | 세무6, 행정·세무1 |
| | | 8급 | 6 | 행정1, 세무3, 행정·세무2 |
| | | 9급 | 6 | 세무5, 행정·세무1 |
| 안 전 관 리 과 | 계 | | 22 | |
| | 일반직 | 소계 | 22 | |
| | | 5급 | 1 | 행정·시설1 |
| | | 6급 | 5 | 행정2, 시설1, 행정·방송통신1, 행정·시설1 |
| | | 7급 | 7 | 행정1, 시설1, 방송통신2, 시설·방재안전2, 방재안전1 |
| | | 8급 | 8 | 행정3, 전산1, 방송통신1, 행정·방송통신1, 방재안전2 |
| | | 9급 | 1 | 시설·방재안전1 |

| 부서 | 직종 | 직급 | 정원 | 직 렬 |
|-------|-----|-----|-----|-------------|
| 민원여권과 | 계 | | 20 | |
| | 일반직 | 소계 | 19 | |
| | | 5급 | 1 | 행정1 |
| | | 6급 | 4 | 행정3, 행정·전산1 |
| | | 7급 | 5 | 행정5 |
| | | 8급 | 7 | 행정7 |
| | | 9급 | 2 | 행정2 |
| | 연구직 | 소계 | 1 | |
| | | 연구사 | 1 | 기록연구사1 |
| 평생교육과 | 계 | | 18 | |
| | 일반직 | 소계 | 18 | |
| | | 4급 | 1 | 행정·기술1 |
| | | 5급 | 1 | 행정1 |
| | | 6급 | 5 | 행정5 |
| | | 7급 | 7 | 행정7 |
| | | 8급 | 3 | 행정3 |
| | 9급 | 1 | 행정1 | |
| 문화체육과 | 계 | | 20 | |
| | 일반직 | 소계 | 20 | |
| | | 5급 | 1 | 행정1 |
| | | 6급 | 6 | 행정6 |
| | | 7급 | 6 | 행정5, 행정·시설1 |
| | | 8급 | 6 | 행정5, 공업1 |
| | | 9급 | 1 | 행정1 |

| 부서 | 직종 | 직급 | 정원 | 직 렬 |
|-------------|-----|-------|----|--------------------------|
| 마 을 자 치 과 | 계 | | 15 | |
| | 일반직 | 소계 | 15 | |
| | | 5급 | 1 | 행정1 |
| | | 6급 | 5 | 행정4, 행정·전산1 |
| | | 7급 | 7 | 행정6, 행정·전산1 |
| | | 8급 | 2 | 행정2 |
| | | 9급 | | |
| 도 서 관 정 책 과 | 계 | | 24 | |
| | 일반직 | 소계 | 24 | |
| | | 5급 | 1 | 행정·사서1(개방1) |
| | | 6급 | 9 | 행정1, 행정·사서6, 행정·시설1, 전산1 |
| | | 7급 | 5 | 행정1, 사서3, 행정·사서1 |
| | | 8급 | 6 | 사서3, 행정·사서3 |
| | | 9급 | 3 | 사서2, 행정·사서1 |
| 복 지 정 책 과 | 계 | | 18 | |
| | 일반직 | 소계 | 18 | |
| | | 4급 | 1 | 행정1 |
| | | 5급 | 1 | 행정·사회복지1 |
| | | 6급 | 4 | 행정2, 사회복지2 |
| | | 7급 | 6 | 행정1, 사회복지4 , 행정·사회복지1 |
| | | 8급 | 4 | 사회복지2, 행정·사회복지2 |
| 9급 | 2 | 사회복지2 | | |

| 부서 | 직종 | 직급 | 정원 | 직 렬 |
|-------------|-----|----|----|-------------------------|
| 사 회 보 장 과 | 계 | | 30 | |
| | 일반직 | 소계 | 30 | |
| | | 5급 | 1 | 행정·사회복지1 |
| | | 6급 | 4 | 행정1,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2 |
| | | 7급 | 11 | 행정4, 사회복지4, 행정·사회복지3 |
| | | 8급 | 11 | 사회복지6, 행정·사회복지5 |
| | | 9급 | 3 | 사회복지3 |
| 노 인 장 애 인 과 | 계 | | 23 | |
| | 일반직 | 소계 | 23 | |
| | | 5급 | 1 | 행정·사회복지1 |
| | | 6급 | 5 | 행정4, 행정·사회복지1 |
| | | 7급 | 8 | 행정2, 사회복지3, 행정·사회복지3 |
| | | 8급 | 6 | 행정2, 사회복지3, 행정·사회복지1 |
| | | 9급 | 3 | 사회복지2, 행정·사회복지1 |
| 여 성 아 동 과 | 계 | | 23 | |
| | 일반직 | 소계 | 23 | |
| | | 5급 | 1 | 행정·사회복지1 |
| | | 6급 | 6 | 행정3, 사회1, 행정·사회복지2 |
| | | 7급 | 7 | 행정3, 사회2, 행정·사회복지2 |
| | | 8급 | 7 | 행정4, 사회1, 보건1, 행정·사회복지1 |
| | | 9급 | 2 | 사회복지2 |

| 부서 | 직종 | 직급 | 정원 | 직 렬 |
|------------|-----|----------------|----|--------------------------------|
| 출 산 보 육 과 | 계 | | 17 | |
| | 일반직 | 소계 | 17 | |
| | | 5급 | 1 | 행정·사회복지1 |
| | | 6급 | 4 | 행정·사회복지4 |
| | | 7급 | 5 | 행정1, 시설·사회복지1,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2 |
| | | 8급 | 5 | 행정2,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2 |
| | | 9급 | 2 | 행정1, 행정·사회복지1 |
| 경 제 지 원 과 | 계 | | 18 | |
| | 일반직 | 소계 | 18 | |
| | | 4급 | 1 | 행정·기술1 |
| | | 5급 | 1 | 행정1 |
| | | 6급 | 4 | 행정3, 공업1 |
| | | 7급 | 5 | 행정1, 공업2, 수의1, 행정·수의1 |
| | | 8급 | 5 | 행정3, 공업2 |
| 9급 | 2 | 행정·공업1, 행정·수산1 | | |
| 일 자리 정 책 과 | 계 | | 12 | |
| | 일반직 | 소계 | 12 | |
| | | 5급 | 1 | 행정1 |
| | | 6급 | 3 | 행정3 |
| | | 7급 | 4 | 행정4 |
| | | 8급 | 3 | 행정3 |
| 9급 | 1 | 행정1 | | |

| 부서 | 직종 | 직급 | 정원 | 직 렬 |
|-----------|-----|----|----|------------------------|
| 자 원 순 환 과 | 계 | | 22 | |
| | 일반직 | 소계 | 22 | |
| | | 5급 | 1 | 행정·환경1 |
| | | 6급 | 6 | 행정3, 행정·환경2, 행정·환경·공업1 |
| | | 7급 | 9 | 행정5, 공업1, 환경2, 행정·환경1 |
| | | 8급 | 5 | 행정3, 공업1, 환경1 |
| | | 9급 | 1 | 행정1 |
| 환 경 보 전 과 | 계 | | 20 | |
| | 일반직 | 소계 | 20 | |
| | | 5급 | 1 | 행정·환경1 |
| | | 6급 | 5 | 환경1, 행정·환경3, 행정·공업1 |
| | | 7급 | 6 | 행정1, 환경4, 행정·환경1 |
| | | 8급 | 7 | 공업1, 환경2, 행정·환경4 |
| | | 9급 | 1 | 환경1 |
| 공 원 녹 지 과 | 계 | | 19 | |
| | 일반직 | 소계 | 19 | |
| | | 5급 | 1 | 행정·녹지·시설1 |
| | | 6급 | 4 | 녹지3, 행정·공업·녹지1 |
| | | 7급 | 5 | 녹지5 |
| | | 8급 | 7 | 공업1, 녹지4, 시설·녹지1, 행정1 |
| | | 9급 | 2 | 녹지1, 행정·녹지1 |

| 부서 | 직종 | 직급 | 정원 | 직 렬 |
|-----------|-----|-----|----|-------------------------------|
| 위 생 정 책 과 | 계 | | 20 | |
| | 일반직 | 소계 | 20 | |
| | | 5급 | 1 | 행정·보건1 |
| | | 6급 | 5 | 보건4, 행정·보건1 |
| | | 7급 | 5 | 보건5 |
| | | 8급 | 6 | 보건4, 행정·보건2 |
| | | 9급 | 3 | 보건1, 행정·보건2 |
| 건 설 과 | 계 | | 27 | |
| | 일반직 | 소계 | 27 | |
| | | 4급 | 1 | 행정·기술1 |
| | | 5급 | 1 | 행정·시설1 |
| | | 6급 | 6 | 행정1, 시설2, 기계운영1, 공업·시설2 |
| | | 7급 | 13 | 행정3, 공업1, 시설7, 기계운영1, 운전1 |
| | | 8급 | 6 | 공업2, 시설3, 행정1 |
| 9급 | | | | |
| 건 축 과 | 계 | | 19 | |
| | 일반직 | 소계 | 19 | |
| | | 5급 | 1 | 행정·시설1 |
| | | 6급 | 5 | 시설2, 행정·시설1, 공업·시설1, 시설·방재안전1 |
| | | 7급 | 5 | 시설4, 사회복지1 |
| | | 8급 | 6 | 행정1, 시설2, 공업2, 공업·시설 1 |
| 9급 | 2 | 시설2 | | |

| 부서 | 직종 | 직급 | 정원 | 직 렬 |
|-----------|-----|----|----|------------------|
| 도 시 주 택 과 | 계 | | 14 | |
| | 일반직 | 소계 | 14 | |
| | | 5급 | 1 | 행정·시설1 |
| | | 6급 | 3 | 시설3 |
| | | 7급 | 4 | 시설4 |
| | | 8급 | 4 | 시설2, 행정·시설2 |
| | | 9급 | 2 | 행정1, 시설1 |
| 도 시 계 획 과 | 계 | | 16 | |
| | 일반직 | 소계 | 16 | |
| | | 5급 | 1 | 행정·시설1 |
| | | 6급 | 4 | 행정1, 시설2, 행정·시설1 |
| | | 7급 | 5 | 행정3, 공업1, 시설1 |
| | | 8급 | 5 | 행정1, 시설4 |
| | | 9급 | 1 | 행정·시설1 |
| 교 통 행 정 과 | 계 | | 16 | |
| | 일반직 | 소계 | 16 | |
| | | 5급 | 1 | 행정·시설1 |
| | | 6급 | 5 | 행정3, 시설1, 행정·세무1 |
| | | 7급 | 5 | 행정2, 세무1, 행정·세무2 |
| | | 8급 | 3 | 행정1, 시설2 |
| | | 9급 | 2 | 행정1, 시설1 |

| 부서 | 직종 | 직급 | 정원 | 직 렬 |
|-----------|-----|----|----|------------------|
| 차 량 민 원 과 | 계 | | 20 | |
| | 일반직 | 소계 | 20 | |
| | | 5급 | 1 | 행정1 |
| | | 6급 | 3 | 행정2, 행정·공업1 |
| | | 7급 | 5 | 행정4, 공업1 |
| | | 8급 | 8 | 행정8 |
| | | 9급 | 3 | 행정3 |
| 공 간 정 보 과 | 계 | | 20 | |
| | 일반직 | 소계 | 20 | |
| | | 5급 | 1 | 행정·시설1 |
| | | 6급 | 5 | 시설2, 행정·시설3 |
| | | 7급 | 8 | 시설6, 전산1, 행정·시설1 |
| | | 8급 | 6 | 시설5, 방송통신1 |
| | | 9급 | | |

[별표3]

직속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제2조제3항 관련)

| 부서 | 직종 | 직급 | 정원 | 직렬 |
|-------|-----|-------------|----|--|
| 합계 | | | 88 | |
| 보건행정과 | 계 | | 21 | |
| | 일반직 | 소계 | 21 | |
| | | 4급 | 1 | 기술1 |
| | | 5급 | 5 | 의무4, 행정·보건1 |
| | | 6급 | 4 | 행정·보건1, 보건·약무·간호·의료기술3 |
| | | 7급 | 5 | 보건1, 간호1, 의료기술1, 보건·약무·의료기술2 |
| | | 8급 | 5 | 행정1, 보건1, 의료기술1, 운전1, 간호1 |
| | | 9급 | 1 | 행정·보건1 |
| 건강증진과 | 계 | | 39 | |
| | 일반직 | 소계 | 39 | |
| | | 5급 | 1 | 보건·간호·약무·의료기술1 |
| | | 6급 | 7 | 보건1, 간호2, 약무·간호1 보건·간호·의료기술3 |
| | | 7급 | 9 | 간호7, 보건1, 보건·간호1 |
| | | 8급 | 22 | 보건2, 간호17, 보건·간호2, 운전1 |
| 9급 | | | | |
| 질병관리과 | 계 | | 21 | |
| | 일반직 | 소계 | 21 | |
| | | 5급 | 2 | 의무1, 행정·보건·간호1 |
| | | 6급 | 4 | 보건·간호2, 의료기술1, 보건·약무·간호·의료기술1 |
| | | 7급 | 6 | 보건1, 간호1, 의료기술1, 보건·간호2 보건·간호·의료기술1 |
| | | 8급 | 6 | 간호2, 의료기술2, 운전1, 보건·간호1 |
| 9급 | 3 | 보건2, 행정·보건1 | | |

| 부서 | 직종 | 직급 | 정원 | 직렬 |
|----------------|-----|----|----|----------------------------|
| 송도건강생활 지원센터 | 계 | | 7 | |
| | 일반직 | 소계 | 7 | |
| | | 5급 | 1 | 보건·간호·약무·의료기술1 |
| | | 6급 | 2 | 보건1, 간호1 |
| | | 7급 | 3 | 보건·간호1, 의료기술1, 보건·간호·의료기술1 |
| | | 8급 | 1 | 행정1 |
| | | 9급 | | |

[별표4] 동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제2조제4항 관련)

| 부서 | 직종 | 직급 | 정원 | 직렬 |
|---------|-----|----|-----|----------------------|
| 합계 | | | 228 | |
| 유 련 1 동 | 계 | | 17 | |
| | 일반직 | 소계 | 17 | |
| | | 5급 | 1 | 행정·사회복지1 |
| | | 6급 | 3 | 행정1,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1 |
| | | 7급 | 3 | 행정2, 사회복지1 |
| | | 8급 | 5 | 행정3,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1 |
| | | 9급 | 5 | 행정1, 사회복지2, 행정·사회복지2 |
| 유 련 2 동 | 계 | | 17 | |
| | 일반직 | 소계 | 17 | |
| | | 5급 | 1 | 행정·사회복지1 |
| | | 6급 | 3 | 행정1,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1 |
| | | 7급 | 3 | 행정2, 사회복지1 |
| | | 8급 | 6 | 행정4,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1 |
| | | 9급 | 4 | 행정1, 사회복지2, 행정·사회복지1 |
| 선 학 동 | 계 | | 18 | |
| | 일반직 | 소계 | 18 | |
| | | 5급 | 1 | 행정·사회복지·시설·환경1 |
| | | 6급 | 3 | 행정1, 사회복지2 |
| | | 7급 | 5 | 행정2, 사회복지3 |
| | | 8급 | 4 | 행정3, 사회복지1 |
| | | 9급 | 5 | 행정1, 사회복지2, 행정·사회복지2 |

| 부서 | 직종 | 직급 | 정원 | 직렬 |
|------|-----|----|----|----------------------|
| 연수1동 | 계 | | 19 | |
| | 일반직 | 소계 | 19 | |
| | | 5급 | 1 | 행정·사회복지1 |
| | | 6급 | 4 | 행정1, 사회복지2, 사무운영1 |
| | | 7급 | 5 | 행정2, 사회복지3 |
| | | 8급 | 6 | 행정3, 사회복지2, 행정·사회복지1 |
| | | 9급 | 3 | 사회복지2, 행정·사회복지1 |
| 연수2동 | 계 | | 19 | |
| | 일반직 | 소계 | 19 | |
| | | 5급 | 1 | 행정·사회복지1 |
| | | 6급 | 3 | 행정1, 사회복지2 |
| | | 7급 | 5 | 행정2, 사회복지3 |
| | | 8급 | 6 | 행정4,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1 |
| | | 9급 | 4 | 행정1, 사회복지2, 행정·사회복지1 |
| 연수3동 | 계 | | 18 | |
| | 일반직 | 소계 | 18 | |
| | | 5급 | 1 | 행정·사회복지1 |
| | | 6급 | 3 | 행정1, 사회복지2 |
| | | 7급 | 4 | 행정2, 사회복지2 |
| | | 8급 | 4 | 행정2, 사회복지2 |
| | | 9급 | 6 | 행정2, 사회복지2, 행정·사회복지2 |

| 부서 | 직종 | 직급 | 정원 | 직렬 |
|------|-----|----|----|----------------------|
| 청학동 | 계 | | 19 | |
| | 일반직 | 소계 | 19 | |
| | | 5급 | 1 | 행정·사회복지1 |
| | | 6급 | 3 | 행정1, 사회복지2 |
| | | 7급 | 5 | 행정2, 사회복지2, 행정·사회복지1 |
| | | 8급 | 6 | 행정2, 사회복지2, 행정·사회복지2 |
| | | 9급 | 4 | 행정2,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1 |
| 동춘1동 | 계 | | 12 | |
| | 일반직 | 소계 | 12 | |
| | | 5급 | 1 | 행정1 |
| | | 6급 | 2 | 행정1, 사회복지1 |
| | | 7급 | 3 | 행정2, 사회복지1 |
| | | 8급 | 5 | 행정3, 행정·사회복지2 |
| | | 9급 | 1 | 행정1 |
| 동춘2동 | 계 | | 12 | |
| | 일반직 | 소계 | 12 | |
| | | 5급 | 1 | 행정1 |
| | | 6급 | 2 | 행정1, 행정·사회복지1 |
| | | 7급 | 2 | 행정2 |
| | | 8급 | 5 | 행정2,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2 |
| | | 9급 | 2 | 행정2 |

| 부서 | 직종 | 직급 | 정원 | 직렬 |
|------|-----|----|----|----------------------|
| 동춘3동 | 계 | | 11 | |
| | 일반직 | 소계 | 11 | |
| | | 5급 | 1 | 행정1 |
| | | 6급 | 2 | 행정1, 행정·사회복지1 |
| | | 7급 | 3 | 행정2, 사회복지1 |
| | | 8급 | 5 | 행정2, 행정·사회복지2, 사회복지1 |
| | | 9급 | | |
| 송도1동 | 계 | | 13 | |
| | 일반직 | 소계 | 13 | |
| | | 5급 | 1 | 행정·사회복지1 |
| | | 6급 | 2 | 행정1, 행정·사회복지1 |
| | | 7급 | 3 | 행정2, 행정·사회복지1 |
| | | 8급 | 5 | 행정4, 사회복지1 |
| | | 9급 | 2 | 행정1, 사회복지1 |
| 송도2동 | 계 | | 13 | |
| | 일반직 | 소계 | 13 | |
| | | 5급 | 1 | 행정1 |
| | | 6급 | 2 | 행정1, 행정·사회복지1 |
| | | 7급 | 3 | 행정2, 사회복지1 |
| | | 8급 | 5 | 행정4, 사회복지1 |
| | | 9급 | 2 | 행정1, 사회복지1 |

| 부서 | 직종 | 직급 | 정원 | 직렬 |
|------|-----|------------|----|----------------------|
| 송도3동 | 계 | | 16 | |
| | 일반직 | 소계 | 16 | |
| | | 5급 | 1 | 행정1 |
| | | 6급 | 2 | 행정1, 사회복지1 |
| | | 7급 | 4 | 행정3, 사회복지1 |
| | | 8급 | 6 | 행정6 |
| | | 9급 | 3 | 사회복지2, 행정·사회복지1 |
| 송도4동 | 계 | | 11 | |
| | 일반직 | 소계 | 11 | |
| | | 5급 | 1 | 행정·환경1 |
| | | 6급 | 2 | 행정1, 사회복지1 |
| | | 7급 | 2 | 행정2 |
| | | 8급 | 4 | 행정3, 사회복지1 |
| 9급 | 2 | 행정1, 사회복지1 | | |
| 송도5동 | 계 | | 13 | |
| | 일반직 | 소계 | 13 | |
| | | 5급 | 1 | 행정1 |
| | | 6급 | 2 | 행정1, 행정·사회복지1 |
| | | 7급 | 3 | 행정2, 행정·사회복지1 |
| | | 8급 | 4 | 행정2,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1 |
| 9급 | 3 | 행정2, 사회복지1 | | |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 제정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를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2월 18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자치법규명

-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

2. 제정이유

- 복잡하고 다양해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의 일방적 정책 추진이 아닌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를 반영한 정책추진을 위해 다양한 주체들의 구정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협치친화적 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민관협치의 목적과 정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1조~제3조)
- 구민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고,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제5조)
- 민관협치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해 협치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회의 기능, 구성인원, 임기 등을 정함(안 제7조~제11조)
- 협치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제18조)

-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의 수립을 명시하고 기본계획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9조)
- 구청장은 지속가능한 협치를 위하여 협약, 제도개선, 정책평가, 정책 발굴, 사업 추진 등 민관협치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20조~제22조)
- 민관 협력을 촉진하고, 협치 사업의 전문적인 집행 등을 위해 민관협치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음(안 제23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3. 10.(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다. 기타사항
이 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연수구청 마을자치과 (☎749-72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라. 제출서식

| 개 정 (안) | 사 유(구체적으로) |
|---------|------------------|
| | (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

- 마. 보내실 곳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 연 락 처 : (전화) 749-7236, (FAX) 749-7219
 - E-mail : ci1314@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yeonsu.go.kr
- 바. 첨부
 -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

〈붙임〉 제정(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구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관협치”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구민과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가 공동으로 정책을 기획·결정·실행·평가하는 구정 운영 방식 및 체계 등을 말한다.
2. “구민”이란 구의 관할 구역(이하 “관내”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사람,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관내의 기관·법인 또는 단체(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민관협치 활성화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민관협치는 구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민관 간 수평적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질 것
2. 모든 참여자들은 민관협치 과정 자체가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할 것
3. 민관협치의 모든 과정은 구민과 구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할 것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구민은 누구나 구의 정책 제안·결정·실행·평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 ② 구민은 정책과정 참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지속가능한 민관협치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정책과정 참여를 확대하고, 참여자들의 민관협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민관협치를 통해 수립된 구민 의견을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관협치에 대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연수구 협치위원회

제7조(설치) 구청장은 민관협치 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연수구협치위원회(이하 “협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8조(기능 등) ① 협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평가·환류에 관한 사항
2.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협치위원회는 민관협치 활동에 대한 평가 및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시할 수 있고, 구청장은 이를 실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구성) ① 협치위원회는 공동의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3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협치위원회의 의장은 구청장과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사람 중에서 선출

된 사람이 공동으로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민관협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민관협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민관협치에 관심과 참여의지를 소명하고 공개모집에 지원하여 선정된 구민
 2. 시민단체, 직능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추천한 사람
 3.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한 소속 의원 2명 이내
 4. 협치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연구기관 연구원 또는 학계 전문가
 5.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⑤ 구청장이 제4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인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협치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협치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의장의 직무) ① 공동의장은 공동으로 협치위원회를 대표하고, 협치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인 공동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 하고, 임시회는 공동의장이 모두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공동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재난, 전염병 등으로 국가비상상태인 경우 회의를 생략하거나 비대면으로 개최 할 수 있다.

② 공동의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공동의장은 필요한 경우 안건 협의 등에 관련되는 전문가나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협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공개해야 하며, 세부 공개방식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에 해당되는 사유 및 협치위원회 의결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회의진행, 회의자료, 회의록을 비공개 할 수 있다.

제14조(간사) 협치위원회의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민관협치 업무를 주관 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5조(의견 수렴 등) 협치위원회는 민관협치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국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운영위원회 등) 협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치위원회에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 그 밖에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 협치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의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제3장 민관협치 활성화 등

제19조(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① 구청장은 정책과정에서의 국민의견 반영 및 참여 확대를 위해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관협치 활성화정책의 기본방향
2. 민관협치 분야별 정책목표 및 추진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자원 조달
4. 이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향
5.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주요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민관협치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제20조(민관협치 협약) ① 구청장은 지역사회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사

회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을 위하여 이해관계자 등과 민관협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에는 이해관계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명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기본계획 또는 연도별 민관협치 실행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21조(제도개선 및 정책평가) 구청장은 협치위원회가 제시한 협치활동에 대한 평가 및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합의사항에 따라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절차와 제도를 개선하고, 민관 간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한 정책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제22조(민관협치 관련 사업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발굴과 실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내·외 협치 사례 조사 및 연구, 협치 모니터링 사업
 2. 협치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토론회 등 개최
 3. 구민과 공무원의 협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
 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시민 참여 활성화 사업
 5. 민·관 또는 관·관, 민·민 협치 네트워크 구축 사업
 6. 구민참여 등 협치 활성화를 위한 홍보 사업
 7.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기관·단체 등을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협치사업의 총괄 및 제도 실행 등을 위하여 협치추진단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23조(민관협치전문인력) 구청장은 민관 협력을 촉진하고, 민관협치 사업 전반에 대한 집행·조정·자문 등을 위하여 민관 협력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협치지원관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24조(포상) 구청장은 민관협치를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협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민관협치 관련 공적이 현저한 구민 및 공무원 등에 대해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5조(공표 등) 구청장은 민관협치 활성화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매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백서 등을 제작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제24조에 따라 채용된 협치지원관은 이 조례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